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서,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(5급 1명)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(5급 1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99. 99. ~ 99. 9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6조제2항 중 “21명”을 “22명”으로, “5급 7명”을 “5급 8명”으로 한다.
별표 7 중 총계 “1,018”을 “1,01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08”을 “1,009”로 하며, 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“8”을 “9”로 한다.

별표 7의2 중 총계 “1,023”을 “1,02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13”을 “1,014”로 하며, 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“13”을 “1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	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법무를 담당하는 1명(6급 1명),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(9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1명(4급 4명, 4급 또는 5급 2명, 5급 7명, 6급 5명, 8급 3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2명 ----- ----- 5급 8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③ 삭제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7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,018	1,019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1,008	1,009	+1
·	·	·	
·	·	·	
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8	9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7의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23</u>	<u>1,024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013</u>	<u>1,014</u>	+1
·	·	·	
·	·	·	
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<u>13</u>	<u>14</u>	+1
·	·	·	
·	·	·	